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31호

시행일자 2017. 1. 2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(입원환자 식대 관련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및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 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
  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66(2016. 12. 30)
  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67(2016. 12. 30)
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5호, 2016.12.29.)」및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1호, 2016.12.29.)를 개정·발령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○ 입원환자 식대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식대(금액) 산출방법 신설

[시행일] : 2017.1.1.부터

*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고시개정문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